서울과학기술대학교 규정 제701호

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사협의회 운영 규정

서울과학기술대학교(총무과), 02-970-6138

제정 2022. 8. 23.

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사용자(서울과학기술대학교)와 근로자(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회계직원)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서울과학기술 대학교의 발전과 근로자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신의성실의 의무) 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.
- 제3조(노동조합과의 관계)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및 기타 모든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.
- 제4조(사용자의 의무) ① 사용자는 제7조에 따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(이하 "근로자위원"이라 한다)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다.
 - ②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업무를 위하여 장소 제공 등 기본적 편의를 제공한다.

제2장 협의회의 구성

- 제5조(협의회의 구성)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노사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는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(이하 "사용자위원"이라 한다)과 근로자위원 각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제6조(사용자위원) 사용자위원은 서울과학기술대학교(이하 "본교"라 한다) 총장(또는 총장의 위임을 받은 자)과 총장이 본교 교직원 중에서 위촉하 는 자로 한다.
- 제7조(근로자위원) 근로자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되, 대학회계직원 누구나 협의회 위원으로 입후보 할 수 있다. 다만,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 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.
- 제8조(의장) ① 협의회의 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사용자위원과 근로 자위원 중 각 1명을 공동의장(이하 "의장"이라 한다)으로 한다.
 - ②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업무를 총괄한다.
- 제9조(간사) 노사 쌍방은 회의의 기록 등 사무를 담당하는 간사 1명을 각각 둔다.
- 제10조(위원의 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단, 사용자위원은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다른 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.
 - ② 노사 쌍방은 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다.
 - 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- ④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라도 그 후임자가 선출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담당한다.

- 제11조(위원의 신분 및 처우) ① 위원은 비상임 · 무보수로 한다.
 - ② 사용자는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위원의 협의회 참석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.

제3장 근로자위원 선출

- 제12조(선거관리위원회 구성) ① 근로자위원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 (이하 "선관위"라 한다)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선관위는 선거 공고일부터 14일 전에 구성한다.
- 제13조(선거관리위원회의 임무) 선관위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선거 및 일정공고
 - 2. 투표 및 입후보자 등록 등에 관한 사항
 - 3. 당선자 결정에 관한 사항
 - 4. 기타 선거와 관련된 사항
- 제14조(선거관리위원 선출) 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에 참여를 희망하는 대학회계직원 중에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한다.
- 제15조(선거일) 근로자위원 선거는 근로자위원 임기 만료일 15일 이전에 실시한다.
- 제16조(후보등록) ①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본교 대학회계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(복수추천 가능)을 받아 선관위에 등록하여야 한다.
 - ② 선거관리위원은 공정한 투표관리를 위하여 근로자위원에 입후보할 수 없다.
- 제17조(근로자위원 선출) ①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

- 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위원은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하여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별로 근로자 수에 비례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근로자(이하 이 조에서 "위원선거인"이라 한다)를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위원선거인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·비밀·무기명 투표로 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- ② 근로자위원은 부서별 인원비례에 따라 배정된 인원을 선출하되 당선 자는 투표결과 다수득표자 순으로 한다.
- ③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장기근속자, 연장자 순으로 당선자를 결정한다. 제18조(보궐선거) ① 근로자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결원이 발생한 날부 터 30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한다.
 -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제17조에 의한 근로자위원으로 선출되지 못한 자중 다수득표자순에 의한 차점자 명부를 작성·보관하고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보궐선거 없이 명부상 서열에 따라 충원할 수 있다.

제4장 협의회의 운영

- 제19조(회의) 협의회는 매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며, 필요 시 공동의장의 합의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.
- 제20조(회의 소집) ① 회의는 공동의장의 합의로 공동의장이 소집한다.
 - ②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 - ③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일시, 장소,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- 제21조(정족수) 회의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의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제22조(회의의 공개) 협의회 회의는 공개한다. 다만, 협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제23조(비밀 유지)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. 다만, 비밀의 범위는 매 회의에서 정한다.
- 제24조(회의록 비치) ① 회의록은 노사쌍방의 간사 중 1명이 작성하여 각 1 부씩 보관한다.
 -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[별지 제1호 서식]의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 - 1. 개최일시 및 장소
 - 2. 출석위원
 - 3. 협의내용 및 의결사항
 - 4. 기타 토의사항
 - ③ 회의록에는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한다.
 - ④ 회의록은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.

제5장 협의회의 임무

- 제25조(협의 사항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.
 - 1. 생산성 향상과 성과 배분
 - 2. 근로자의 채용·배치 및 교육훈련
 - 3. 근로자의 고충처리
 - 4. 안전, 보건,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

- 5. 인사·노무관리의 제도 개선
- 6.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·재훈련·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
- 7. 작업과 휴게 시간의 운용
- 8.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 개선
- 9.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
- 10.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
- 11.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지원
- 12.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
- 13. 근로자의 복지증진
- 14.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
- 15.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
- 16. 「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
- 17. 그 밖의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
- 제26조(의결 사항)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 - 1. 근로자의 교육훈련 및 능력개발 기본 계획의 수립
 - 2.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
 - 3.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
 - 4. 각종 노사공동위원회의 설치
 - 5. 제25조 협의 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
 - 6. 협의회 운영 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

- 제27조(보고 사항) ①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성실하게 보고, 설명하여야 한다.
 - 1. 대학운영계획 중 대학회계직원과 관련된 사항
 - 2. 대학회계직원의 인력운영계획에 관한 사항
 - 3. 본교의 경제적 · 재정적 현황
 - 4.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
 - ② 근로자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·설명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.
 - ③ 근로자위원은 근로자의 요구사항을 보고・설명할 수 있다.
- 제28조(의결 사항의 공지) ①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10일 이내에 공지하여야 한다.
 - ②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게시판 등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한다.
- 제29조(의결 사항의 이행) 사용자와 근로자는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그 결과를 상호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.
- 제30조(임의 중재) ① 협의회는 노사대표 각 2명으로 중재위원회를 구성 할수 있다.
 - ② 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재한다.
 - 1.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협의회가 의결하지 못한 경우
 - 2.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 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
 - 3. 기타 중재가 필요한 경우

- ③ 제2항의 규정에도 중재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할 수 있다.
-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재 결정이 있으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.

제6장 고충처리

- 제31조(고충처리위원)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본 교에 고충처리위원을 둔다.
- 제32조(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임기) ① 고충처리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노사 각 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의 임기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하되, 노사 쌍방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- 제33조(고충처리위원의 신분 및 처우) ① 고충처리위원은 비상임·무보수로 한다.
 - ② 사용자는 고충처리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고충처리위원의 협의 및 고충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무한 것으로 본다.
- 제34조(고충처리 절차) ① 근로자는 고충처리위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상담을 신청한다.
 - ② 상담신청을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당해 근로자의 고충을 성실히 청취한 후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- ③ 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하기 곤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쳐 협의처리한다.
- 제35조(대장 비치) 고충처리위원은 [별지 제2호 서식]에 의한 고충 사항의 접수 및 그 처리에 관한 대장을 작성, 비치하고 이를 1년간 보존한다.

제7장 보칙

- 제36조(신고 의무사항) 협의회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야 할 제반 사항은 사용자 측에서 한다.
- 제37조(규정 외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「근로 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」등 관련 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.

부칙(제701호, 2022. 8. 23.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제 차 (정기·임시) 노사협의회 회의록
회 의 일 시	
회 의 장 소	
협의 사 항	
보고사항	
의 결 사 항	
의결된 사항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	
그 밖의 참고사항 및 전분기 의결된 사항의 이행 상황	

참 석 위 원										
근 로 자	위 원	사용자	위 원							
성 명	서 명	성 명	서 명							

210mm×297mm[일반용지 60g/㎡(재활용품)]

	[발시 제2호 시작]											
고충사항 접수·처리대장												
접수 번호	접수 일자	고충처리	요청인 소속	고충내용	처리결과	회신 일자	고충 처리					
건모	로시	성명	부서			크기	위원					